

보석허가청구

사건번호 및 재판부 : 2000고단 000호 (제 00단독)

사 건 명:절도등

피 고 인: 0 0 0

직 업:회사원

생 년 월 일 : 19○○년 ○월 ○○일생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청 구 이 유

1.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, 피고인은 20○○. ○. ○. 15:00경 ○○도 ○○군 ○○읍 ○○ 소재 국유지 내에 위치한 □□남도 문화재자료 제 75호인 "□□□최선생 신도비"보호책 설치공사를 하던 중 지표면으로부터 40센티미터 지점에 매장되어 있던 국가 소유의 금동보살입상 1점, 금동불좌상 1점, 아미타여래입상 1점, 관음보살좌상 1점, 여래좌상 1점 등 총 5점의 불상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이다.라는 것입니다.

2. 이 사건의 경위

피고인은 이 건 당시 □□건설주식회사에서 화물차 운전일을 하며 위 보호적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. 피고인은 위 보호책 설치공사의 기초공사 과정에 서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위 물건 5점을 발견하였습니다. 이에 피고인은 물욕 을 이기지 못하고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3. 정상에 관한 주장

가. 자백과 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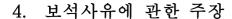
- (1)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한 기초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.
- (2) 더욱이, 피고인은 고향 문화재를 절취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 날 2점을 군 문화계에 신고하였습니다. 또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위 범행 얼마 후 피고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지내기까지 하였습니다.

나. 불법의 경미성

- (1) 피고인의 행위는 우연히 땅 속에 묻혀있던 물건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가져가고 그 중 2점을 매도하려 했던 것 뿐입니다.
- (2) 피고인은 위 물건의 매도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매수가격, 수수, 매수자 결정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.
- (3) 피고인은 위 매도로 금 ○○○원을 수수하고 그 중 ○○○원은 위 김□□에 게 돌려주었습니다.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원은 ○○○뿐이며 이도 채무변제, 조그만 구멍가게 인수계약금 등 생활비조로 사용하였습니다.

다. 동기의 참작성

- (1)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가 망한 후 막노동, 화물차 운전 등의 일을 하며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던 가장입니다. 그나마 일거리가 많지 않아 피고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- (2) 피고인의 가정은 조석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빈한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 자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. 피고인이 이 건에 이르게 된 것도 자녀들 의 양육비 문제로 얼마간의 빚을 진 피고인이 매일 이를 걱정하던 중 이 건 물건들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.
- (3)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은 현재 피고인의 처가 일당을 받고 하우스에서 노동일을 하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.



가. 피고인의 전과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

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철없던 10대 시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, 형사소송법 제 95조 제 1호에 규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, 즉 사형,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.

나.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할 염려가 없습니다.

피고인은 OO도 OO군 OO면 OO길 OO에서 처 및 두 자녀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어 도주할 염려는 없습니다.

다.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습니다.

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모두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.

5. 결론

이상과 같은 사정 및 기타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선처를 통하여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, 이번에 한하여 적당한 보증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.

6.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제출허가신청

피고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정도로 빈한한 형편이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, 피고인의 처 박□□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에 갈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 탄원서(피고인의 처)	1통
1. 주민등록등본 사본	1통
1. 재산관계진술서	1통
1.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	1통
1.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증명서	1통





2000. 0. 0.

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O O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형사제○단독 귀중

			Soft Kind	1屋구조공단
제출법원	사건계속 법원		www.klac	
신청권자	피고인, 변호인, 법정다 거인, 고용주	배리인, 배우자,	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	
제출부수	신청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94~100조의2, 102~104조의2	
불복절차 및 기간			보통항고(형사소송법 402조) 에는 제외(형사소송법 404조)	